

#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약관

## 공시사항

항상 중국공상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행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1. 기본사항

제정일	개정시행일	판매종료여부(종료일)	기존고객적용여부
2014.09.29	2022.08.06	판매중	적용

### 2. 개정대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p><b>제 2 조(정의)</b></p> <p>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인증서”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서명키를 담고 있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p> <p>② “로그인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밀 번호로서 서비스 신청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p>	<p><b>제 2 조(정의)</b></p> <p>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로그인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밀 번호로서 서비스 신청 시 이용자 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p>	인증서 내용 삭제
2	<p><b>제 8 조(이용 시의 본인확인방법)</b></p> <p>① (생략)</p> <p>② 이용자가 제 5 조 1 항 신청절차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p>	<p><b>제 8 조(이용 시의 본인확인방법)</b></p> <p>① (좌동)</p> <p>② 이용자가 제 6 조 신청절차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p>	관련 조항 수정, 인증서 내용 삭제

	<p>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p> <p>1. 인터넷뱅킹: 이용자 ID, 로그인 비밀번호, 은행이 정한 인증서 암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p>	<p>아래 각 호 중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p> <p>1. 인터넷뱅킹: 이용자 ID, 로그인 비밀번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p>	
3	<p><b>제 11 조(서비스 이용의 제한)</b></p> <p>①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은행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p> <p>1.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제 14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각호에 해당되었을 경우</p> <p>2. 로그인 비밀번호가 연속 5회,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연속 3회 이상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p> <p>3.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전자금융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고객이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일일 누적 5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당일 거래 제한) 및 전체 누적 15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인터넷뱅킹서비스 거래 제한)</p> <p>4. 야간 또는 비영업일 등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 (제한시간은 이</p>	<p><b>제 11 조(서비스 이용의 제한)</b></p> <p>①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은행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p> <p>1.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제 14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각호에 해당되었을 경우</p> <p>2. 로그인 비밀번호가 연속 5회,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연속 3회 이상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p> <p>3.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전자금융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고객이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일일 누적 5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당일 거래 제한) 및 전체 누적 15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인터넷뱅킹서비스 거래 제한)</p> <p>4.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의 사용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p>	현황 반영

	<p>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p> <p><u>5.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u></p> <p>② 서비스가 제한된 이용자는 <u>은행 영업점에 이용제한 해제를 서면으로</u> 신청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p>	<p>5. 야간 또는 비영업일 등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 (제한시간은 이 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p> <p><u>6.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u></p> <p>② 서비스가 제한된 이용자는 <u>은행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u> 이용제한 해제를 신청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p>	
4	<p><b>부 칙</b></p> <p>제 1 조 (생 략)</p> <p>제 2 조 (생 략)</p> <p>제 3 조 (생 략)</p> <p><u>제 4 조 (신 설)</u></p>	<p><b>부 칙</b></p> <p>제 1 조 (좌 동)</p> <p>제 2 조 (좌 동)</p> <p>제 3 조 (좌 동)</p> <p><u>제 4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8 월 06 일부터 시행한다.</u></p>	시행일 신설

### 3. 담당부서명 : 운영관리부

#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중국공상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인터넷뱅킹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로그인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밀번호로서 서비스 신청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 제3조(약관의 적용)

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한다),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외환거래기본약관, 각 예금별 약관, 기타 개별 거래약관 및 약정서, 금융결제원 제 규약을 적용한다.

②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자산관리서비스, 전자고지 및 수납서비스 등 개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은행과 이용자가 별도로 체결한 계약은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4조(이용매체)** 이용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이체, 계좌개설·해지, 외환, 사고신고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제6조(서비스 신청)** 서비스는 이용자가 은행에 전자금융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확인, 승낙함으로써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

## 제7조(계좌이체 한도)

-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은행이 정한 기본한도 범위 이내에서 1일 이체한도와 1회 이체한도를 신청서상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이체한도 변경은 이용자가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이용 시의 본인확인방법)

- ① 기본약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 체결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관련계좌번호(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본인으로 인정한다.
- ② 이용자가 제6조 신청절차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래 각 호 중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인터넷뱅킹: 이용자ID, 로그인 비밀번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 **제9조(출금계좌)**

- ①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는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출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는 예금은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으로 한다.

### **제10조(예금의 신규 및 해지)**

- ① 이용자는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계좌(이하 "근거계좌"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한다)를 신규개설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연결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10조 2항에 따라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명확인된 연결계좌와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서비스를 통해 해지할 수 없다.

### **제11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은행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호에 해당되었을 경우
  2. 로그인 비밀번호가 연속 5회,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연속 3회 이상 잘못 입력 되었을 경우
  3.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전자금융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고객이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일일 누적 5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당일 거래 제한) 및 전체 누적 15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인터넷뱅킹서비스 거래 제한)
  4.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의 사용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5. 야간 또는 비영업일 등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 (제한시간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6.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

- ② 서비스가 제한된 이용자는 은행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제한 해제를 신청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 제공시간)** 서비스 종류별 이용시간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한다.

### **제13조(이용수수료)**

- ① 계좌이체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되는 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인출 한다.
- ② 기타 서비스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영업점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하고,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9조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변경, 사고사항의 신고)**

- ① 이용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출금계좌번호,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로그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용매체를 통하여 직접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②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또는 접속장치의 분실·도난, 비밀번호·암호의 누설 등의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때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다음 영업일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해지)**

- ① 서비스 해지는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이용자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이용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해지 하더라도 은행이 수수료 자동이체계좌의 해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6조(약관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

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체한도

구분	기본한도	
	1회	1일
인터넷뱅킹	개인	1억원
	기업	10억원
		50억원

<별표 2>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수수료

구분	당행이체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무료	500원